

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전공과목 선·후수이수체계 준수에 관한 내규

제정 2014.02.01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의 선·후수이수체계 준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(재)설정절차)

- ① 교과목의 선·후수 관계도를 조사한 후 반드시 필요한 준수과목을 설정한다.
- ② 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선후이수체계를 수립한다.

제3조(선·후수 준수과목)

영역	선·후수 준수과목 체계
전공	1. 유체역학 → 선박유체역학
	2. 재료역학(고체역학) → 선박해양구조해석

제4조(이수체계 준수)

- ①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참여학생은 위에 언급한 선·후수 과목을 필히 준수해야만 한다.
- ② 미 준수시 공학인증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.(단, 4학년 1학기 직전까지)
- ③ 그러나, 부득이한 경우에 선수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도 후수과목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수강할 수 있다.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수강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.
- ④ 이수체계 준수과목은 교육과정에 추가한 2013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한다.(이전 학번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후수과목 수강 허락사유서

학번:

성명 :

본인은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선·후수이수체계를 준수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나, ()의 이유로 ()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() 과목 담당 ()교수의 허락을 받아 후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교수평가의견

--

제3조(선·후수 준수과목)

영역	선·후수 준수과목 체계
전공	1. 유체역학 → 선박유체역학
	2. 재료역학(고체역학) → 선박해양구조해석

제4조(이수체계 준수)

- ①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참여학생은 위에 언급한 선·후수 과목을 필히 준수해야만 한다.
- ② 미 준수시 공학인증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.(단, 4학년 1학기 직전까지)
- ③ 그러나, 부득이한 경우에 선수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도 후수과목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수강할 수 있다. 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수강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.
- ④ 이수체계 준수과목은 교육과정에 추가한 2013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한다.(이전 학번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)

20 . . .

확인자 () 담당교수

(서명 혹은 인)